

## 초과근무 관련 확인서 (사업주용)

사업장명		사업주 성명	
소재지	(전화 번호 : )		
근로자 성명		생년월일	

1. 상기인의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?

(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 적용 업종인 경우 또는 제63조의 적용 제외 업종인 경우 비해당)

-

2. 상기인의 퇴직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달에 대하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(연달아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.)

★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~③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출퇴근 기록부 ②초과근무 명령서 ③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서

해당 월	시작일	종료일	소정 근로시간	실제 근로시간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년 월				

★ 작성 예시

해당 월	시작일	종료일	소정 근로시간	실제 근로시간
2018년 10월	10/9	10/13	40	56

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작성자 직위 :

작성자 성명 : (서명)

사업장 명 : (직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